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. 5. 3 선고 2016가단2057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,지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5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대 2815m² 중 별지 도면 표시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E²,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목조 및 세멘부력조 스투트지붕 단층 주택 1동 중 일부 57m², 같은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목조 스투트지붕 단층 창고 1동 22m², 같은 도면 표시 17, 18, 19, 20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목록 스투트지붕 단층 변소 1동 4m²를 각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55, 56, 15, 16, 20, 57, ㅍ², E2,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지 212m²'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,
 - 가. 2,221,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3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 - 나. 2,33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3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 - 다. 2016. 1. 1.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연 467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성원제

별지